

의안
번호

957

【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2. 12. 03(월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12. 04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12. 12(수)

2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의 변화에 따라 법령개정 미적용,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령 조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변화에 따라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령이 다른 사무 조정
 -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권한 등
- 나. 사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임하여서는 안 될 사무의 삭제
 - 기생충 예방에 대한 권한 등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

4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나.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5. 참고 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2. 10. 15 ~ 11. 5까지(의견없음)

6. 검토의견

- ▶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1의 내용 중 근거법령 과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한 용어와 문구를 정비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